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1. 27.

행정재경위원회

의안 번호	298
----------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1. 3. 강남구청장(주민자치과)

나. 상정의결

- 제315회 강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2023. 11. 27.)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행정국장 : 이호현)

가. 제안이유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동행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 면제로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맞추어 힐링센터 사용료 감면 비율을 대폭 확대하여 다자녀 가정에게 혜택을 주어 센터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중증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자(단, 1인에 한함)에 대한 사용료 면제(별표3)
- 다자녀 가족 지원을 위한 사용료 감면 확대(별표3)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장애인 복지법」 및 시행령,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의 : 기획예산과, 가족정책과, 감사담당관
-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입법예고(2023. 9.27. ~ 2023.10.17.) 특기할 사항 없음
 -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조성수)

- 주민자치과가 제출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일부개정 대상 조례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는 4개 장, 28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20조(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 관련 “별표 3”의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 현행 조례 제20조의 사용료 감면은 강남힐링센터 사용료(수강료 및 대관료) 중 수강료가 중심이 될 것이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 3>을 개정하는 것이 주요 목적임.
- 수강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동행자가 수강 목적이 없더라도 장애인을 위해 그 1인의 수강료를 감면해 주는 것임. 다만, 형평성 차원에서 장애인은 50%만 감면하는 것을 유지함.
 - 이 경우 실제 중증장애인은 동행 활동보조자 면제 포함 150%를 감면받는 것임
- 또한 저출산시대 극복을 위해 세 자녀 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 자녀 나이 18세까지)을 100% 감면해 주는 것을 반영하였음.

- 다만, 별표 내용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증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단, 1인에 한함)” 중 “대리”를 반영한 이유는 해당부서의 설명이 필요할 것임. 강의를 장애인을 대신하여 대리료 수강하는 것을 말하는지 의문임.

○ 본 일부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목적으로 “별표 3”을 개정하는 것으로 큰 쟁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수강료 이외의 자유입장 이용료, 개인힐링 소규모실 또는 가족단위 그룹힐링 대규모실 감면 검토는 필요하지 않은지 논의 여지 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